

## 【별첨 1】

# 관련 규정 및 법률

■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9.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2.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14.12.24>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4.12.24.>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0.1.>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0.1.>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2.24.>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4.12.24.>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18.9.27., 개정 2019.10.1.>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18.9.27.>
1.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2.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인사규정 제84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9., 2012.12.21.>

1. 의사직 - 65세
  2. 연구직.사무직.간호직.약무직.보건직.의학물리학직 – 60세 <개정 2015.12.24.>
  3. <삭제2015.12.24.>
-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말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 다만, 의사직의 경우는 3월에서 8월 사이는 8월말일에, 9월에서 익년도 2월사이에는 익년도 2월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0.11.9.>

-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규정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규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서류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 또는 면접시험 전에 학교성적 등에 의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 능력 등을 검정한다.
  3.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따라 검정한다.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5.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심사,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 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4.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6.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8.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 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